

협력업체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012. 4. 1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협력업체 선정·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영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조직의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idssw.co.kr)에 공개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www.idssw.co.kr)에 변경 후 15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⑤ 당사 품질, 안전검증기준에 의거 판정된 적격 여부 등

(2) 협력업체 선정, 등록 및 절차

신규 거래 희망업체는 당사의 홈페이지(www.idssw.co.kr)에 등재되어 있는 협력회사의 등록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제출한다.

- ① 신용평가 심사(공인기관:www.esrm.co.kr)후 당사로 전자 문서 전송
- ② 협력사의 기본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작성 후 당사로 전자문서 전송
- ③ 선정기준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등록여부 검토
- ④ 품질담당조직의 심사 시행
- ⑤ 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 승인절차 진행 후 정식 협력사로 등록

(3)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4)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건은 당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5)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변경 기준 및 절차의 공개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 변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idssw.co.kr>)에 상시 공개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변경, 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원사업자는 협력업체 등록변경, 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변경 기준 및 절차

기존 등록된 협력회사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해당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사업체명, 대표명 변경
- ②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③ 업종의 변경
- ④ 기존거래대상품목의 변경, 추가
- ⑤ 기존거래대상사업의 추가, 변경 시

단, 하자 보증 미 이행" 또는" 하자 보증 비용 정산" 미결 상태의 협력회사가 상호 및 사업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장 재등록하는 경우는 등록을 거절 할 수 있다.

아.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⑤ 기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의 계약 해지,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12.04.01.)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